

자동차 [] 첨가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
[] 촉매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사전검사 합격번호			
변경사유			
변경(예정)일			
변경 내용	구분	기존사항	변경사항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무실 또는 사업장 주소		
	제품명(제품의 품질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첨가제 제조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첨가제 검사합격증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촉매제 제조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촉매제 검사합격증 원본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
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